`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희망건축물 신청 안내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개요

- (목적)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자체 및 중앙·공공기관의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사업 공모 전 희망건축물 접수
- (신청기간) '25. 11. 7.(금) ~ '25. 12. 12.(금)
- (신청기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26년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 중인 기관(이하"사업대상기관")
 - * 국가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희망건축물 신청 시 사업대상기관 관리 증빙자료 제출 必)
-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첨부1]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2016년 1월 1일 이전)
- (사업유형) ¹중합형, ²맞춤형, ³군집형 사업 ※ 사업유형별 동시 지원 가능하나, 본 사업 신청 시 지원 조건에 따라 유형별 별도 선정 예정
 - (종합형사업)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적응 기술요소 등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건축물을 우선 지원
 - * 기후적응 기술요소는 본 사업 공모 시 상세 확인 요망
 - (맞춤형사업)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기기 등 맞춤형* 특화지원
 - * 건물의 조건·유형 등에 따라 일부 기술요소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가능
 - ** 종합형과 사업비 지원한도가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조건은 본 사업 공모 시 상세 확인 요망
 - (군집형사업) 지구 단위 내 여러 건축물을 함께 묶어 에너지성능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묶음형 사업지원

□ 신청 방법 [※ 시스템 매뉴얼 공지사항 업로드 예정(11월 7일)]

- ① (시스템 접속) 사업대상기관에서는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 에서 '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을 선택 후 로그인
 - * 기존 회원 :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신규회원 : 회원가입 필요
- ② (희망건축물 등록) 사업대상기관에서는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희망건축물 대상을 건물별로 등록
 - (사업개요 입력) 지역, 사업유형, 광역·기초·건물 담당자정보 입력
 - (건물정보 입력) 건축물명, 지원용도, 주소, 건축물대장 정보, 추경 예정일, 도서 구비현황, 소유구분 등 각 항목 전체 입력

《지원용도 구분 참고》

구분	해당용도	구분	해당용도
1	도서관	15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2	기타교육시설(유치원)	16	사회복지시설(자활센터)
3	기타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	17	사회복지시설(성매매피해지원시설)
4	기타교육시설(직업훈련소)	18	사회복지시설(성폭력피해보호시설)
5	기타교육시설(학원·교습소)	19	사회복지시설(가정폭력보호시설)
6	기타교육시설(독서실·기원)	20	사회복지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경로당	21	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
8	노인요양시설	22	사회복지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9	노인복지시설	23	사회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10	기타노유자시설(아동복지시설)	24	사회복지시설(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11	기타노유자시설(복합노인복지시설)	25	기타공공시설(주민공동시설)
12	사회복지시설(장애인시설)	26	기타공공시설(어린이회관)
13	사회복지시설(정신보건시설)	27	기타 전시장
14	사회복지시설(노숙인시설)	28	수련시설

- ※ (중요) 해당 용도의 세부기준은 [첨부1]의 법적 근거에서 확인할 것
- ※ 일부 용도에 한하여 연면적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③ (증빙서류 제출) 사업대상기관이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별도 첨부 필요(붙임2 양식 업로드)

□ 안내 및 협조 사항

-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축물은 중복 지원 불가**하나, **중복건축물지원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 * ① 군집건축물 중 건축물 대장에서 별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② 복합건축물로서 지원받지 않은 부위 중 지원대상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 '21~'25년 사전조사 및 컨설팅 완료된 희망 건축물 중 미선정된 건축물도 '26년 희망건축물 신청해야 지원 가능
- 희망건축물 신청 물량이 많은 경우, 현장조사 및 컨설팅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향후 현장조사 및 컨설팅 실시 할 경우, 사업대상기관은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관련자료(이주계획 및 지방비 확보계획, 도면 등)를 종합 사업관리 업체에 적기 제공하여야 함
 - ※ 금번 희망건축물 신청은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사전조사'를 위한 것이며, 사업지원 내용 등은 본 사업 공모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26. 2월~4월 : 희망건축물 대상 사전조사(현장조사 및 컨설팅) 시행
- '26. 4월 : 본 사업대상 공모(별도 공지)
- '26. 5월 : 사업대상 선정
- '26. 6월 : 사업비(국비) 1차 교부*
 - *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2차 교부
- '26. 8월 : 사업추진(설계 및 시공)

□ 문의처

ㅇ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권역별 담당 연락처)

	지역	연락처		
수도권역	(서울·경기·인천)	055-771-4855	044-960-6204	
강원권역	(강원)	055-771-4967, 4971	044-960-6208	
충청권역	(대전·세종·충북·충남)	055-771-6925	044-960-6210	
전라권역	(광주·전북·전남·제주)	055-771-4970, 4847	044-960-6206	
경상권역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055-771-4987, 4822	-	

- E-MAIL : greenremodeling@kalis.or.kr

첨부1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용도

- ①「도서관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 (이하 "도서관") * 단 건물 동별 연면적 3,000㎡ 이상 지원불가
- ② 「유아교육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유치원·공립유치원(이하 "기타교육시설(유치원)")
- ③ 「평생교육법」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 시설,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에 따른 언론 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 시설(이하 "기타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
-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하 "기타 교육시설(직업훈련소)")
- 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이하 "기타교육시설(학원교습소)")
- 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독서실**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4호타목에 따른 **기원(이하 "기타교육시설** (독서실·기원)")
- ①「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이하 "경로당")
- ⑧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이하 "노인요양시설")
- ⑨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관·노인교실,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이하 "노인복지시설")
- ⑩「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 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시설·아동

상담소·아동전용시설·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 지원센터·보장원·자립지원전담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기타노유자시설 (아동복지시설)")

- ① 「노인복지법」제31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복합노인복지시설(이하 "기타노유자시설(복합노인복지시설)")**
- ①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59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3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장애인시설)")
- 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정신보건시설)")
- ④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 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이하 "사회복지시설(노숙인시설)")
- 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사회복지시설(자활센터)")
-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사회** 복지시설(성매매피해지원시설)")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성폭력** 피해보호시설)")
- 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 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하 "사회복지시설(가정폭력보호시설)")
- ② 「한부모가족복지시설」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이하** "사회복지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②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② 「건강가정지원센터」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 ②「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 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 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이하 "사회복지시설(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 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제사목에 따른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 을공동구판장(이하 "기타공공시설(주민공동시설)")
- ⑤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7호제다목에 따른 **어린이회관(이하 "기타공공시** 설(어린이회관)")
- ②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가목에 따른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및 제5호제라목에 따른 전시장(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이하 "기타 전시장") * 단 건물 동별 연면적 3,000㎡ 이상 지원불가, 박물관은 제외
- ③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및 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이하 "수련시설"**)
 - * 단. 건물 동별 연면적 3,000㎡ 이상 지원불가
- ※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계획 확정 이후 변동가능